

# 국내외 전자출판물 납본제도의 분석\*

## A Comparative Analysis of Legal Deposit System for Electronic Publications

윤 희 윤(Hee-Yoon Yoon)\*\*

### 목 차

- |                       |                   |
|-----------------------|-------------------|
| 1. 서론                 | 3. 1 납본법령의 성격과 체계 |
| 2. 전자출판물과 납본제도        | 3. 2 납본주체와 피납본기관  |
| 2. 1 전자출판물의 개념과 유형    | 3. 4 납본의 부수와 시한   |
| 2. 2 전자출판물의 동향과 파장    | 3. 5 납본의 보상과 제재   |
| 2. 3 전자출판물의 수집과 납본    | 3. 6 자료의 매체변형     |
| 3. 국내외 전자출판물 납본제도의 분석 | 4. 요약 및 결론        |

### 초 록

납본제도는 모든 국가도서관의 자료수집 및 보존기능에 가장 중요한 법적 수단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기존의 인쇄자료에 기반한 납본제도로는 전자출판물의 망라적 납본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상당수의 국가에서 납본법령을 개정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법령체계, 납본주체와 피납본기관, 대상 자료의 범주, 납본의 부수와 시한, 납본자료의 매체변형, 보상과 제재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 전자출판물의 납본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의 결과는 후속 과제인 국내 납본제도 개선모형의 이론적 기초로 삼을 것이다.

### ABSTRACTS

Legal deposit system is an important legal instrument for national libraries. But the law or act based on print materials in many countries predates the current information age and requires a new legal framework in order to encompass electronic publications. Many national libraries, therefore, are seeking to encourage their governments to establish legal deposit for publications in the whole range of forma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a world-wide trends of the legal deposit system for on-line publications as well as off-line materials. The result of this analysis will be used to develop a new model of legal deposit system in Korea.

키워드: 납본제도, 납본법, 전자출판물, 국가도서관

\* 이 연구는 2002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hy@daegu.ac.kr, <http://biho.daegu.ac.kr/~yhy/>)  
논문접수일자 2002년 5월 22일  
게재확정일자 2002년 6월 18일

## 1. 서론

한 국가의 출판물은 자국의 정신문화인 동시에 인류의 지적 문화유산이다. 그러므로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출판된 자료든 빠짐없이 수집·보존하는 것은 특히 국가도서관의 기본책무이며, 그것을 지원하는 가장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납본제도이다.

프랑스에서 기원한 납본제도는 지금도 대다수 국가도서관이나 국립문서관에서 인쇄자료와 시청각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그런데 20세기 후반부터 출판방식의 디지털화, 축적매체의 다양화, 유통경로의 네트워크화, 정보접근 및 이용행태의 다변화 등으로 인하여 종래의 납본법령은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프랑스·일본·노르웨이·러시아 등이 기존의 납본법령을 개정하였으며, 영국·스웨덴·한국 등은 개정안을 제출하였거나 검토 중에 있다. 그리고 프랑스, 덴마크, 일본 등은 납본 대상에 오프라인 전자출판물을 포함시킨 반면에 핀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은 온라인 전자출판물까지 납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네덜란드처럼 아직도 자발적 납본시스템을 고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국제적 개정추세는 기존의 납본법령이 자료출판 및 유통환경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다. 모든 법령은 현실에 최대한 부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당연지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개정되거나 제안된 각국의 납본법령은 여

러 측면에서 각양각색이다. 그것은 전자출판물의 다양성, 단명성, 가변성, 불안정성 등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납본주체와 피납본기관의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개정취지를 퇴색시킨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의 납본법령을 비교·분석하는 작업은 국내의 납본조항 개정에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자출판물과 납본제도의 상관관계를 전제로 최근에 전자출판물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있는 국내외 납본법령의 성격과 체계, 납본주체와 피납본기관, 대상(제외)자료의 범주, 납본의 부수와 시한, 납본자료의 매체변형, 보상과 제재 등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의 결과는 후속 과제인 국내 납본제도 개선모형을 제안하는 이론적 기초가 될 것이다.

## 2. 전자출판물과 납본제도

### 2.1 전자출판물의 개념과 유형

#### (1) 전자출판물의 개념

전자출판물(electronic publication)은 1980년대에 출현한 전자메일, 1994~95년에 등장한 전자잡지, 그리고 1995~96년의 웹배포로 공식화된 용어이다. 그러나 워낙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도 다각도로 정의되고 있다. 여러 문헌과 웹사이트에서 표현된 관련어를 수합하면 온라인 정보자원(online information resource), 온라인 저작물(online works), 온라인 전자출판물(online electronic

publication), 전자문헌(electronic document), 동적 전자형 자료(dynamic electronic material), 네트워크 출판물(network publication), 네트워크 전자출판물(networked electronic publication), 디지털자료(digital resources), 디지털정보(digital information), 디지털문헌(digital document) 등이 있다.

상술한 용어들은 엄격하게 구별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각각의 개념과 범주는 분명히 다르다. 우선 선치어(온라인, 전자, 네트워크, 디지털)와 후치어(출판물, 저작물, 자료, 정보, 문헌)로 구성된 모든 용어에서 전자는 후자를 수식한다. 그리고 선치어에 합축된 개념의 폭은 '디지털(전자) > 네트워크 > 온라인'의 순이고, 후치어는 '정보 > 자료 > 문헌 > 출판물 > 저작물'의 순이다. 그 중에서 가장 협의의 용어인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법률 제6134호) 제2조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주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전자출판물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를 기록·접근·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출판물'을, 온라인 출판물은 '컴퓨터로 작동이 가능한 포맷(디스켓, CD-ROM 또는 인터넷 버전)으로 제작된 온라인 텍스트'를, 디지털자료는 '컴퓨터와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유통·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무형자료)와 전자형 데이터(CD-ROM 등의 유형자료)'로 정의할 수 있다. 모두 디지털화, 컴퓨터 이용, 네트워크 유통을 공통분모로 한다.

그러나 도서관은 비저작물(편집물, 번역자료 등)과 오프라인 전자자료도 수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온라인 저작물이나 네트워크 출판

물 등을 포괄하는 전자출판물이 더 바람직한 용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출판물에 대하여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문자 등의 정보가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고,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의 도움으로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물체를 말한다. 다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11조)에 의거한 「문화관광부고시」(제1999-15호, 1999. 5. 1)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때 적용하는 전자출판물의 기준을 <표 1>과 같이 고시하고 있다.

이상의 개념과 기준을 종합하면 전자출판물은 한 마디로 '유체물로 인식되지 않고 통신계를 경유하는 저작물'이다. 더 압축하면 '전자적 형태로 생산·배포·축적·이용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이를 도시하면 <그림 1>처럼 '디지털 포맷으로 축적되고 정보네트워크(LAN, WAN, Internet)으로 유통되는 전자형 출판물 또는 제작물(CD-ROM 버전 및 디지털정보)의 집합체'라 할 수 있다(윤희운 2001,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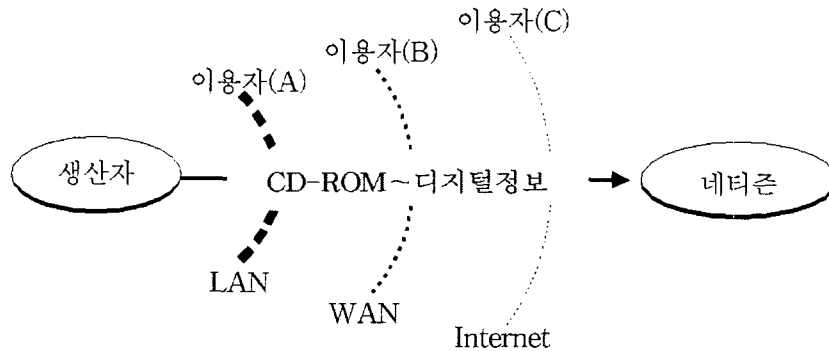
## (2) 전자출판물의 유형

디지털 총아로 부상하고 있는 전자출판물은 용어의 다양성 만큼이나 여러 각도에서 상이한 기준(매체의 가시성, 출판유형, 자료의 속성, 축적포맷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웹정보자원을 포함할 경우, 그 유형은 더욱 복잡하게 된다.

먼저 매체의 가시성 여부로 나누면 물리적 형태를 갖춘 패키지형과 원격 접근이 가능한 네트워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Harai). 전자의

〈표 1〉 『문화관광부고시』의 전자출판물 기준

| 구분        |         | 내용  |
|-----------|---------|---|
| 국내<br>간행물 | 가. 형태   | • CD-ROM 등 유형의 고체물인 전자적 기록매체형태로 발행된 전자출판물   |
|           | 나. 내용   | •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문자·그림·사진·도형 등의 정보를 수록한 전자출판물  |
|           | 다. 기능   | • 색인(index), 검색(retrieval), 선택(selection) 등의 기능을 갖춘 전자출판물                                       |
|           | 라. 출판사  | •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출판사에서 발행한 전자출판물  |
|           | 마. 납본   |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로서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한 전자출판물                             |
|           | 바. 자료번호 |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 번호를 부여받은 전자출판물                                 |
| 외국 수입물    |         | •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수입추천을 받은 전자출판물, 또는 제1항의 가, 나, 다 항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전자출판물 |



〈그림 1〉 전자출판물의 개념과 범주

전형은 CD-ROM이며, 후자는 웹으로 접근·이용할 수 있는 전자잡지(electronic journal)가 대표적이다. 이를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전자는 오프라인 출판물이고 후자는 온라인 출판물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Conference of Directors of National Libraries는 출판유형을 기준으로 인쇄출판물(도서, 잡지, 팜플렛 등)의 전자판, 상호작용형 데이터베이스(서지, 통계, 데이터, 이미지, 텍스트 등을 포함), 상호작용형 멀티미디어(계

입 등), 소프트웨어와 전문가 시스템, 새로운 출판물 형태(네트워크로 이용하는 게시판, 토론 리스트, 전자 예고집 등)로 구분한 바 있다(Lang). Brophy and Wynne(1997, 55)는 자료의 속성을 중심으로 웹페이지 혹은 링크 페이지의 세트, 전자형태로 출판된 잡지논문, 전자잡지의 논문에 포함된 이미지, 인쇄잡지에서 스캔과정을 거친 많은 종류의 텍스트, 전자도서, CD-ROM, 단편적 전자텍스트, 디지털 지도, 디지털 비디오, 디지털 이미지, 화학공식

〈표 2〉 전자출판물의 유형

| 축적매체  | 정보의 속성   | 포맷(파일구조)  | 법적 지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프라인형(디스켓, CD-ROM, CD-I 등)</li> <li>• 온라인형(인터넷 잡지, 웹 정보)</li> <li>• 하이브리드형(인쇄자료 +CD-ROM: 온라인 DB+CD-ROM)</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도서와 멀티미디어 출판물</li> <li>• 전자잡지</li> <li>• 데이터베이스</li> <li>• 인터넷 문헌</li> <li>• 퍼블릭 커뮤니케이션 (NetNews, List servers)</li> <li>• 소프트웨어</li> <li>• 컴퓨터 게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SCII format</li> <li>• database format</li> <li>• word processor format</li> <li>• print format</li> <li>• portable document format</li> <li>• image, sound, video format</li> <li>• structures document format(SGML, HTML)</li> <li>• new format(XML)</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을 요구하는 자료</li> <li>• 공공도메인 자료</li> <li>• 라이선스 자료</li> </ul> |

등의 데이터, 수치데이터의 연속체로 구분하였다.

한편 축적매체, 수록정보의 속성, 포맷(파일구조), 법적 지위를 기준으로 〈표 2〉와 같이 세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도서관에서 자료수집 및 장기보존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전자출판물을 개략적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전자도서(electronic or cyber book) : 아직은 인쇄도서에 비하여 출판종수가 극히 적지만 컴퓨터 관련자료, 문학작품,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유형은 독립형(전자버전으로만 출시된 것), 양립형(인쇄판과 전자버전의 동시 출간), 대체형(인쇄판의 전자버전)이 있다.

② 전자잡지 : 전자출판물의 대종을 차지하는 전자잡지는 다양한 버전으로 출시된다. 인쇄물의 전자 복제형, 부분 복제형, 완전 전자판(영구형), 일시형이 있으며, 축적포맷에 따라 HTML, PDF, XML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③ 데이터베이스 : 대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정보네트워크로 유통되는 전문정보(잡지, 학위논문, 보고서)나 서지정보(TOC) 등의 집합체로서, 온라인 전자잡지의 패키지가 대표적이다. 후자는 출판목록, 색인(인용)지, 초록지, 법령집, 참고도서 등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CD-ROM이 주종을 이룬다. 그 유형은 단일의 컴퓨터에 장착하여 한 사람만 이용하는 싱글버전(stand-alone 버전), 여러 사람(3~4명)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시에 이용하는 네트워크 버전(LAN 버전), 복수의 사이트(대개 2~3개)를 연결하여 원격접근이 가능한 사이트버전(WAN 버전) 등이 있다.

④ 웹정보자원 : 이것은 인터넷상의 홈페이지나 웹사이트에 등장하는 다종다양한 자료(OPAC, 참고자료, 전자잡지, 연구프로젝트, 회의자료, 통계데이터, 법령자료 등)로서, 전자출판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상술한 전자잡지나 데이터베이스는 구독 또는 라이선스의 방식으로 수집해야 하는데 비하여

웹정보자원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받거나 접근할 수 있다.

⑤ 인터넷 링크자료 : 일반적으로 웹자료는 인터넷에서 정보 그 자체나 수록된 매체에 접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비해 링크자료는 서지정보나 원문정보의 소재처(URL)를 링크한 사이트 정보라 할 수 있다. 대개 홈페이지의 주제 게이트웨이 화면이나 특정 논문(보고서)의 참고문헌에서 링크정보를 많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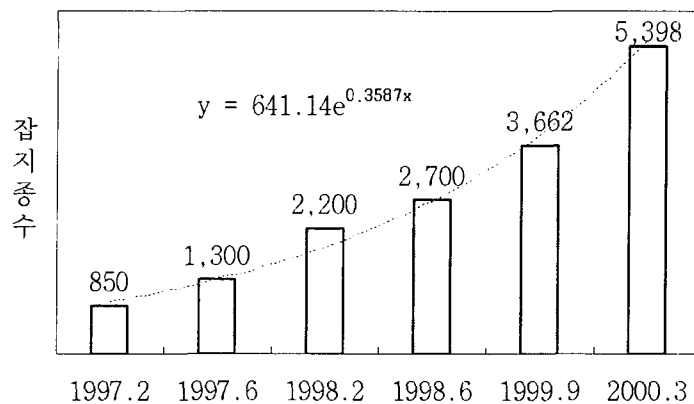
⑥ 기타 전자출판물로는 전자형 예고집(electronic pre-print), 메일링 리스트(mailing list), 토론그룹(discussion groups), 전자우편(e-mail), NetNews, List servers 등이 있다.

## 2. 2 전자출판물의 동향과 파장

먼저 가장 주목해야 할 전자출판물의 최근 동향으로는 출판과정의 디지털화를 들 수 있다. 저자의 원고(파일)를 확보하면 디스크상에서 편집하여 SGML로 구성하거나 PostScript로 페이지 메이킹한 다음에 HTML, SGML,

PDF 등으로 변환 또는 저장하여 인쇄형과 CD-ROM, 또는 양자의 동시버전으로 출시하거나 웹에 업로드하는 경우가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도서관 소장자료의 디지털화에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정보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전자출판물의 비중과 의존도가 크게 증대되고 있다. 어떤 시점에서 조사하더라도 전자출판물의 단명성과 가변성으로 인하여 그 생산량을 정확하게 추산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awrence와 Giles(1999, 107-109)는 1999년초를 기준으로 세계의 웹정보가 이미 8억 사이트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Arnold(2000, 6)에 의하면 전자우편은 연간 50%씩 증가한다. 그리고 2000년도 「Ulrich's Database」에 수록된 온라인 연속간행물은 약 20,430종에 달한다. 지난 3년간(1997~2000)의 「EBSCO Database」에 등재된 온라인 잡지 중에서 유료형은 <그림 2>처럼 급증하는 추세이다. 총 5,398종 가운데 49%가 온라인 버전(인쇄잡지 포함)이고, 34%가 인쇄형과 온라인형의 동시 버전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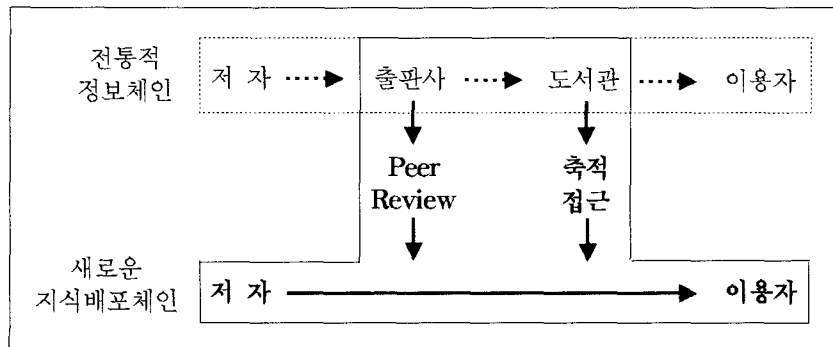
<그림 2> EBSCO DB의 유료 전자잡지 증가추이

17%는 온라인으로만 출판되었다(Gray 2000, 63). Bovebschulte는 10년 내에 전자잡지가 연속간행물 시장을 석권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Lenares 1999, 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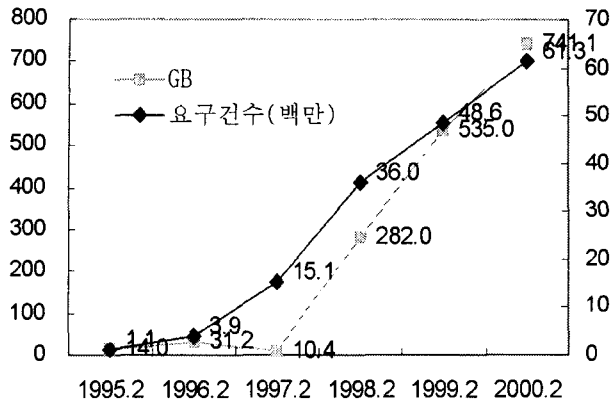
그리고 디지털 자료가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정보네트워크로 유통됨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의 전통적 기조를 가상공간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게다가 인쇄매체도 지속적으로 출판되고 있어 그 양상은 매우 복잡하게 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은 학술정보의 유통 및 접근에 대한 공리(ground-rules)를 변화시킨다(Wilson 1998, 15). 이를 개략적으로 도시하면 <그림 3>과 같이 점선의 선형적 정보체인(저자→출판사→도서관→이용자)은 커뮤니케이션의 전통적 경로이다. 이 채널은 18세기 후반에 확립된 이래로 매우 안정적이며, 미래에도 단행본과 학술지가 출판되고 도서관이 수집·제공하는 한 가장 보편적 양태로 존속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인터넷 정보기술이 대중화된 오늘날의 지식배포 체인은 실선내의 저자와 이용자가 가상공간에서 직접 조우하고 출판사나 도서관이 개입하기도 하는 비선형적 과정이며 매우 가변적이다. 이에 따라 도서관

의 입지는 정보기술이 초래하는 접근채널의 다변화로 계속해서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윤희운 2002, 498). 정보자료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도서관이 배제되거나 상대적 입지가 약화되면 그것은 도서관의 위기를 의미한다. 이용자가 인터넷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으려면 전자출판물의 수집과 보존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술한 동향은 자료의 이용행태에도 반영되고 있다. 그 대명사격이라 할 수 있는 전자잡지의 이용추이는 전자출판물의 수집정책에 중요한 나침반이 되고 있다. 미국의 의회도서관이 매년 2월을 기준으로 지난 6년간(1995~2000) 전자자원 이용통계를 분석한 <그림 4>를 보면 1995년 2월에 1.1백만건에 불과하던 요구건수가 2000년 2월에는 61.3백만건으로 증가하였다. 대학도서관도 최근에 전자출판물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급증하고 있어 전자잡지의 이용도를 분석한 자료가 계속 제시되고 있다. 그 중에서 북미의 연구도서관협회가 500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1년간(1998. 1~1999. 1) 인쇄잡지와 전자잡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쇄잡지는 74%에서 65%로



<그림 3> 전통적 및 새로운 정보커뮤니케이션 체인



〈그림 4〉 LC의 전자자원 이용추이

감소한 반면에 전자잡지는 10%에서 15%로 증가하였다(Lenares 1999, 330). 그런가 하면 Odlyzko(2000)는 전자형 학술정보의 이용률이 매년 50~100%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O'Connor(2000, 40)는 OhioLINK의 통계데이터에 근거하여 미래의 전자형 핵심자료와 주변자료의 이용률을 70(60) : 30(40)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이용통계와 추론은 도서관계가 전자출판물을 장서구성의 전략적 요소로 삼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 2. 3 전자출판물의 수집과 납본

모든 도서관은 전자출판물의 동향과 파장을 감안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 장서에 편입시켜 현재의 이용자를 위한 접근환경을 조성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보존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특히 국가도서관은 자국의 출판물을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국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국가차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하며, 당대는 물론 후대가 자료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식문화의 유산을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한 실천적 수단으로 구입, 기증, 교환, 납본 등이 있으나, 가장 강력하면서도 실효성이 높은 제도적 장치는 역시 프랑스에서 시작된 납본제도(legal deposit system)이다(Rugaas 1998, 41). 원래 법적 납본은 출판사의 검열에서 기원하였으나, 그 목적이 수집에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변하였다. 오늘날 대다수 국가도서관에서 채택하고 있는 납본제도는 '모든 출판물의 생산자로 하여금 지정된 도서관이나 유사기관에 각 출판물의 일정 부수를 납본하도록 강요하는 정부의 규정'을 말한다(Jasion 1991, 7). 유네스코 지침은 '어떤 유형의 문헌을 여러 부수로 생산하는 상업조직 또는 공공단체와 개인이 인정된 국가기관에 1부 이상을 납본하도록 강요하는 법적 의무'로 정의하고 있다(Larivi re 2000, 6). 요컨대 납본제도는 '자료를 출판·생산·수입·배포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일정 부수를 국가도서관이나 지정기관에 의무적 또는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한 법적 장치'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납본은 한 국가의 문화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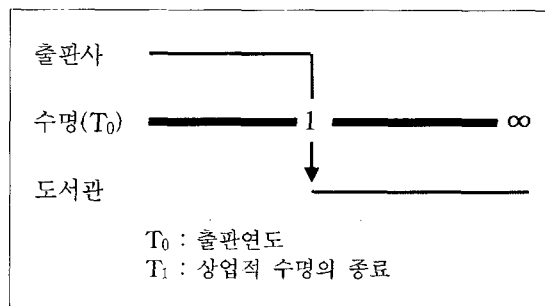


(인쇄자료와 비인쇄자료)을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안전하게 보존함으로써 당대의 이용은 물론 후대에 전달하는 효율적 수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Council of Europe 1999, 23). 그것이 국가도서관의 자료수집에 적용된 이유는 자국에서 생산된 출판물의 망라적 수집, 접근 또는 이용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 국가서지의 생산과 배포, 국가 출판통계의 작성, 저작자 권리의 보호, 교환용 자료의 확보, 지식문화의 보존과 계승 등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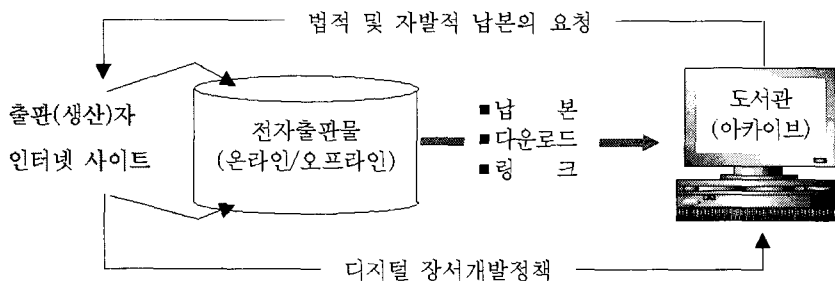
그러나 전자출판물의 경우는 자료포맷의 다양화, 수록된 정보의 가변성과 소멸성, 납본규정의 허술, 출판사(생산자)의 납본회피, 저작권 보호장치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납본의 실적이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납본되더라도

축적과 장기적 보존, 접근조건과 공정이용, 주기적 마이그레이션(migration) 등이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전자출판물은 기대수명이 20~30년인 마그네틱 테이프나 50~100년인 광매체(Bide, Potter, and Watkinson 1999, 7)와 달리, 수록된 정보의 단명성과 소멸성으로 인하여 납본·보존되지 않을 경우에 그 수명은 일반적으로 <그림 5>처럼  $T_0$ (출판연도)에서 출발하여  $T_1$ (수명주기)에서 종료되지만, 도서관에 납본·보존되면 거의 무한대( $\infty$ )로 연장된다.

따라서 전자출판물은 국가 문화유산의 총체적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수집·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림 6>에 도시한 것처럼 법적 및 자발적 납본요청과 디지털 장서개발



<그림 5> 전자출판물의 수명과 아카이빙



<그림 6> 전자출판물의 아카이브 과정

정책을 동시에 구사하여 납본·다운로드·링크 등의 방식으로 축적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 법적 납본의 당위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기존의 인쇄자료 중심의 납본법령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신종 출판매체의 등장, 국가의 도서관 및 정보정책의 변화, 저작권법 등과의 마찰, 법령 자체에 내재된 약점과 허점 등으로 인하여 전자출판물을 납본대상에 포함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국가가 종래의 납본법령을 개정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전자출판물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한 바 있다.

### 3. 국내외 전자출판물 납본제도의 분석

납본제도는 한 국가의 문화유산(출판물)을 총체적으로 수집·보존하는 가장 확실한 장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문화의 중추신경과 보루(last resort)로서의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가도서관은 납본제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어떤 국가도서관도 자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출판물을 구입할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출판정보를 총괄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납본제도를 규정한 법령에는 당연히 출판조류가 반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성격과 체계, 납본주체와 피납본기관, 대상자료와 제외자료의 범주, 납본의 부수와 시기, 보상과 제재조치, 접근(이용)의 허용과 제한, 보존용 복본의 생산여부, 저작권 보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들을 중심으로 각국의 납본법령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3. 1 납본법령의 성격과 체계

1537년 프랑스(국왕 François I)가 세계 최초로 납본법을 도입한 이래로 벨기에(1594년), 영국(1610년), 스웨덴(1661년), 덴마크(1697년), 핀란드(1702년) 등의 순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 왔으며, 오늘날 139개국이나 하나 이상의 공식적 납본제도를 가지고 있다(Jasion 18-31). 그 중에서 주요 국가의 납본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현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이러한 납본법령의 성격과 체계는 국가마다 상이하다(Owen and Walle 1996, 9-14 ; Lariviere ; Martin ; Muir and Davies 2000, 151-166 ; 田中 嘉彦 2000, 212-217). 우선 법령의 성격을 중심으로 구분하면 <표 4>와 같이 프랑스·스웨덴 등의 납본법(legal deposit act), 미국·영국 등의 저작권법(copyright act), 캐나다·독일 등의 국가도서관법(national library act), 한국의 일반 도서관법(general library act), 칠레·쿠바 등의 행정명령이나 포고(decree or ordinance)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네덜란드처럼 어떤 법령도 제정하지 않고 출판사와 납본협정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납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도 법령의 체계로 보면, 많은 국가의 납본제도는 단일의 법령인 납본법, 저작권법, 국가도서관법, 일반 도서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연방체제인 미국, 캐나다, 스위스, 호주, 인도 등에서는 납본제도가 하나 이상의 법령과 관련되어 있다.

〈표 3〉 각국의 납본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현황

| 국가(제정연도)    | 납본관련 법령의 명칭(최근 개정연도)   | 개정안의 제출      |
|-------------|--|--------------|
| 미 국(1790)   | Copyright Act(1976)  |              |
| 캐 나 다(1832) | National Library Act(1985) : National Library Book Deposit Act(1995) : National Library Book Deposit Regulations(1995) |              |
| 영 국(1610)   | Copyright Act(1988)  | 96년(온라인 포함)  |
| 독 일(1836)   | Gesetz uber die Deutsche Bibliothek(1990)  |              |
| 프 랑 스(1537) | Legal Deposit Legislation(1992)  | 94년(효력발생)    |
| 벨 기 예(1594) | Legal Deposit Law(1965)  |              |
| 덴 마 크(1697) | Act on Copyright Deposit of Published Works(1997)  |              |
| 핀 란 드(1707) | Legal Deposit Act(2000)  | 모든 자료 포함     |
| 오스트리아(1922) | National Library Law(2000)   |              |
| 네덜란드(1974)  | 자발적 납본(관계법령이 없음)   | 95년(전자자료납본)  |
| 스 웨 덴(1661) | Legal Deposit Act(1993)  | 98년(웹자료 포함)  |
| 노르웨이(18C)   | Act of Legal Deposit(1989)   |              |
| 스 페 인(1715) | Act of Instituto Bibliografico Hispanico(1971)   |              |
| 러 시 아(1783) | Federal Act on the Obligatory Copy of Documents(1994)  |              |
| 일 본(1948)   | 國立國會圖書館法(2000)   |              |
| 한 국(1963)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 2002(개정안 검토) |
| 말레이시아(1966) | Legal Deposit of Library Material Act(1986)  |              |
| 호 주(1869)   | Copyright Act (1968) : State Acts  |              |
| 뉴질랜드(1965)  | National Library Act(1994)   |              |
| 남 아 공(1982) | Legal Deposit Act(1997)  |              |

〈표 4〉 국가별 납본법령의 성격

| 법적 편제    | 대상국가   |
|----------|--|
| 납본법      |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그리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남아공, 벨기에, 도미니카 공화국, 이란, 라트비아 등 |
| 저작권법     | 미국, 영국, 호주, 아일랜드, 멕시코, 뉴질랜드  |
| 국가도서관법   | 캐나다,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중국, 나이제리아, 베네즈엘라 등                                 |
| 일반 도서관법  | 한국, 타스마니아  |
| 행정명령(포고) | 칠레, 쿠바, 나이제리아, 필리핀, 레바논, 리투아니아   |

그렇다면 납본제도는 어떤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리고 단일의 법령 또는 복수의 법령 체계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있는가. 먼저 납본 전용의 법령이 존재할 경우, 체계성과 일관성은 유지할 수

있는 있지만, 국가도서관법 등에 비하여 법적 효력이 약화될 수 있다. 다른 법령의 일부, 가령 저작권법에 규정할 경우에는 대개 2~3년을 주기로 법률의 적합성을 검토할 때 납본조항도 개정·보완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국

가도서관의 입장에서 자료수집의 정책 및 적용의 일관성, 서지레코드의 표준화, 국가서지의 발간, 협력시스템의 측면에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국가도서관법에 규정한 경우는 수집과 보존, 접근과 이용의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자료의 유형별로 수집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국가기관의 역할이 불분명하거나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납본법령의 체계는 각국의 역사적 또는 문화적 배경, 국가의 행정구조, 법제와 관행, 출판사정과 정보환경, 도서관 시스템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전용법령이 가장 바람직하며, 다른 법령의 일부 조항으로 제정되더라도 납본제도의 근본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납본법령은 국가의 책무라는 차원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규정한 국내의 납본제도는 법적 체계나 실효성에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 3. 2 납본주체와 피납본기관

먼저 납본주체(depositor)의 경우, 여러 국가의 전통적인 납본법령에서는 출판사로 명

시하거나 한정된 경우가 많다. 물론 아직도 그리고 향후에도 인쇄자료가 계속해서 생산되는 한 출판사가 납본의 주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전자출판물의 경우, 다양한 주체(저자, 출판사, 생산자, 인쇄소, 지적소유권자, 수입업자 등)가 생산 및 유통과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영화필름·TV 프로그램·웹사이트 등과 같은 자료에는 여러 주체가 동시에 관여하므로 납본주체를 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출판매체의 다양화와 국가도서관의 수집책무를 감안하면 자료유형별로 납본주체를 세분하여 법률 그 자체나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각국의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인쇄자료 중심의 피납본기관(depository)은 <표 5>에 집약한 바와 같이 단일기관으로 집중되는 경우와 여러 국가기관으로 분산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후자는 다시 인쇄자료를 복수의 도서관에서 납본하도록 규정한 영국, 핀란드 등의 경우와 인쇄자료는 국가(의회)도서관에 납본하고 비인쇄자료는 다른 국가기관에 납본하는 프랑스와 스웨덴 등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다수 국가에서의 피납본기관은 국가도서관이다. 이것은 납본의 목

<표 5> 피납본기관의 현황

| 국 가   | 국 가  |
|-------|--|
| 국가도서관 |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이스라엘, 한국, 중국, 싱가포르, 남아공,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뉴질랜드 |
| 의회도서관 | 미국, 일본, 뉴질랜드   |
| 국가문서관 | 스웨덴, 핀란드, 세네갈, 안티구아, 바하마   |
| 대학도서관 | 영국, 핀란드, 스웨덴, 쿠웨이트, 리베리아   |
| 정부도서관 | 홍콩, 차드, 가나   |

적이 국가도서관의 사명 및 기능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국가도서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법령에서 피납본기관을 명시하지 않은 일부 국가에서는 대학도서관이나 국가문서관 등을 납본처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매우 드문 현상이지만 대학도서관·의회도서관·지역의 국립도서관 등을 납본처로 추가한 경우도 있으며, 일부 국가는 하나 이상의 다른 국가기관을 특수자료(영화필름, 녹음자료, 라디오/TV 프로그램)의 납본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납본제도가 법령으로 제정되는 시점에 이미 많은 특수자료를 수장하여 납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거나, 이들 자료를 취급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피납본기관의 분산화와 집중화 중에서 어느 방식이 더 바람직한가. 전자는 도서관의 상호협력 및 자원공용의 역사가 길고 정보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면적이 넓고 연방제로 운영되는 선진국에서 가능한 제도이다. 일례로 캐나다의 경우, 국가차원의 납본법과 더불어 주(지방) 단위의 납본규정이 별도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지역에 소재하는 출판사는 국가도서관과 그 지역의 대표도서관에도 납본해야 하는데, 이것은 국가도서관에 대한 납본회피의 방지, 지역별 자료수집 및 보존의 용이성, 재해나 분실 등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 지역주민의 접근과 이용의 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반면에 국토가 협소하거나 도서관 상호협력이 부진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자료의 유형에 관계없이 납본창구를 국가도서관으로 일원화하는 집중제가 수집 및 서지통정, 관리와 보존

의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 차선책으로 전문적인 기술이나 장비가 필요한 특수자료에 한하여 다른 국가기관을 납본처로 지정할 수도 있다. 다만 국내의 경우는 인쇄자료의 수집·조직·보존의 총체적 책임을 부여받은 국가도서관이 시청각자료 뿐만 아니라 전자출판물도 관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집중제 방식으로 납본창구를 단일화하여 지식문화의 유산을 총괄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3. 3 납본 대상(제외)자료의 범주

전통적으로 납본제도는 인쇄자료를 그 대상으로 삼아 왔으나, 정보기술의 발달에 편승하여 다양한 기록매체가 등장함에 따라 납본자료의 범주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상자료의 포괄성이 납본제도의 요체라는 것을 반증한다. 최근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납본제도의 개정과 보완을 서두르는 이유도 바로 전자출판물의 대중화에 기인한다.

대다수 국가는 <표 6>에 집약한 바와 같이 납본 대상자료의 범주를 인쇄자료, 시청각자료, 그리고 전자출판물 중의 오프라인 자료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전자출판물의 경우는 4개국(핀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납본법령에 명시하고 있을 뿐, 미국은 웹자료를, 덴마크는 전자형 신문과 잡지를 제외하고 있다. 프랑스와 일본도 납본법령을 수정하여 오프라인은 포함시켰으나, 온라인 전자출판물은 제외하였다. 아직은 동적출판물의 수집, 보존, 이용과 관련된 법적 측면과 기술적 문제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도서관장 회의에서는 납본법을

〈표 6〉 납본 대상자료의 범주

| 국가   | 자료 | 인쇄자료 | 시청각자료 | 전자출판물 |        |
|------|----|------|-------|-------|--------|
|      |    |      |       | 오프라인  | 온라인    |
| 미 국  |    | ●    | ●     | ●     | 웹자료 제외 |
| 캐나다  |    | ●    | ●     | ●     | 자발적 납본 |
| 영 국  |    | ●    | -     | -     | -      |
| 독 일  |    | ●    | ●     | ●     | -      |
| 프랑스  |    | ●    | ●     | ●     | -      |
| 벨기에  |    | ●    | -     | -     | -      |
| 덴마크  |    | ●    | ●     | ●     | ●      |
| 핀란드  |    | ●    | ●     | ●     | ●      |
| 스웨덴  |    | ●    | ●     | ●     | -      |
| 스페인  |    | ●    | ●     | ●     | -      |
| 노르웨이 |    | ●    | ●     | ●     | ●      |
| 호 주  |    | ●    | ●     | 자발적   | 링크     |
| 러시아  |    | ●    | ●     | ●     | ●      |
| 일 본  |    | ●    | ●     | ●     | -      |
| 한 국  |    | ●    | ●     | 일부    | -      |
| 남아공  |    | ●    | ●     | ●     | ●      |
| 뉴질랜드 |    | ●    | ●     |       |        |

개정하지 않았다면 출판동향이 전자적 방법으로 확산될 때까지 또한 관련규정이 갱신되었다면 법령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있을 때까지 관망한 후에 납본규정을 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Conference of Directors of National Libraries 2000, 117). 하지만 점진적 수용 입장을 견지하는 순간부터 국가의 문화유산은 계속해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디지털자료의 납본을 무시하는 국가와 도서관은 그들의 문화유산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고 회복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발견할 것이다(Seadle 2001, 299). 납본의 측면에서 전자출판물과 비전자출판물의 법적 차이를 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 출판기술의 최근 동향을 감안하면 납본법령은 새로운 매체포맷과 온라인

출판물을 수용하여야 한다(National Library of Scotland 1999, 2). 앞으로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 쟁점사항, 기술적 문제와는 무관하게 모든 전자출판물(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납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Larivi re, 19-20). 납본을 통한 전자출판물의 축적과 보존은 미래 세대를 위한 차분한 준비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는 전자출판물을 점진적으로 납본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고 있다. 법리상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므로 전자출판물을 납본법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시기상조가 아니라 만시지탄의 사안으로 간주해야 한다. 다만 전자출판물의 납본문제는 법제수단이나 국가도서관의 의지

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법령이 존재하더라도 사서의 납본요청과 출판사의 자발적 납본이 전제되어야 하며, 수집된 자료의 확인·축적·보존과정을 거쳐야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제도적 및 실무적 난제가 적지 않기 때문에 대상(제외) 자료의 범주를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 대강을 집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전자출판물의 납본대상에 어떤 법리를 적용할 것인지가 명확해야 한다. 통상 한 국가의 모든 법률은 다른 국가에 적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출판물 중에서 수입물, 자국에 거주하는 사람(자국민이나 외국인)이 외국에서 출판한 자료,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자국민이 외국에서 출판한 자료, 외국에서 출판된 자료 가운데 자국에 관한 자료 등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중에서 어느 법리를 따를 것인지에 따라 납본의 대상이 달라진다.

② 어떤 법리를 수용하든 전자출판물의 국적을 판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자출판물의 기원은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어떠한 방식으로 수집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도 어렵다. 이 경우의 국적기준은 자료 또는 메타데이터에 표시된 국가나 지역의 위치, 생산(출판)한 주체(기관이나 개인)의 위치, 최초 저자의 거주지, 복수 저자의 국적, 출판물의 네트워크상 주요 위치 등의 순서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어떤 국적기준을 적용하든 대상자료의 범주를 규정할 때는 망라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기록문화의 총체적 유산을 수집·보존하려는 납본제도의 기본취지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미래에 등장할 새로운 출

판매체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령이 구성되어야 한다. 오늘날 모든 유형의 인쇄자료, 시청각자료(오디오 테이프, CD, 비디오 카세트, 필름 등), 정적(오프라인) 전자매체(CD-ROM, 디스켓, 등), 동적(온라인) 전자매체(전자잡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등), 방송매체(라디오, TV 등의 프로그램)가 납본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 국가의 경우처럼 텍스트가 인쇄된 티셔츠와 다른 의류품을 납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④ 납본제도는 국가적 장서개발의 핵심 도구이다. 따라서 대상자료의 범주를 결정할 때는 장서개발이라는 정책적 마인드가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납본법령에 '출판'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되,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대중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출판(생산)된 모든 전자출판물을 납본 대상으로 간주하되, 보존의 측면에서는 납본 도서관이 수집·관리할 수 있는 자료로 국한하여야 한다.

⑤ 납본대상의 범주를 결정할 때 출판사의 인정기준이나 우선순위가 규정되어야 한다. 등록된 출판사의 자료, 출판사가 대중에게 배포·이용시킬 목적으로 생산한 자료, 그리고 출판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자자료는 납본 대상에서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는 납본대상을 공식적으로 등록한 출판사의 자료로 제한하고 있다.

⑥ 온라인 전자출판물은 구체적인 대상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어떤 전자출판물이 다른 정보매체로도 생산되었거나, 개정판이 출

시되고 내용이 업그레이드된 경우에는 각각 납본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무료로 이용할 수 없는 전자출판물은 납본되어야 한다. 예컨대 프랑스는 인쇄버전과 전자버전이 동시에 출판된 경우에 별개의 판으로 간주하여 각각 일정 부수를 납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인터넷자료 가운데 중요한 것은 다운로드 CD-ROM에 저장하고 있다.

⑦ 다만 납본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국가도서관의 기술여건을 감안할 때 보존할 수 없는 자료, 비공식적으로 변경된 버전(판), 네트워크상에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단편적인 웹자료(홈페이지 등)와 커뮤니케이션(E-mail, NetNews, Listservs)은 납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3. 4 납본의 부수와 시한

적정 납본부수와 시기의 문제는 대상자료의 범주와 더불어 납본제도에서 매우 중시해야 할 요소이다. 먼저 인쇄자료 중심의 납본부수에 대한 법적 기준을 분석하면 <표 7>과 같이 국가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다수 국가는 2~7부내에서 납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납본부수를 출판량, 수입여부, 자료의 유형과 언어, 생산주체에 따라 달리 설정한 경우도 적지 않다. 가령 캐나다는 통상 2부를 납본하도록 규정한 가운데 100부 이하를 출판하면 1부를 납본하고 3부 이하를 출판할 경우에는 납본의무가 없다. 반면에 녹음자료나 멀

<표 7> 납본 대상자료의 범주

| 국가 \ 부수 | 1 | 2 | 3 | 4 | 5 | 6 | 7 | 기타 |
|---------|---|---|---|---|---|---|---|----|
| 미 국     |   | • |   |   |   |   |   |    |
| 캐나다     |   | • |   |   |   |   |   |    |
| 영 국     |   |   |   |   |   | • |   |    |
| 독 일     |   | • |   |   |   |   |   |    |
| 프랑스     |   |   |   | • |   |   |   |    |
| 스웨덴     |   |   |   |   |   |   | • |    |
| 덴마크     |   | •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    |
| 핀란드     |   |   |   |   |   | • |   |    |
| 노르웨이    |   |   |   |   |   |   | • |    |
| 러시아     |   |   |   |   |   |   |   | •  |
| 중 국     |   |   |   |   | • |   |   |    |
| 일 본     |   |   |   |   |   |   |   | •  |
| 한 국     |   | • |   |   |   |   |   |    |
| 싱가포르    |   | • |   |   |   |   |   |    |
| 호 주     | • |   |   |   |   |   |   |    |
| 뉴질랜드    |   |   | • |   |   |   |   |    |
| 남아공     |   |   |   |   | • |   |   |    |



티미디어 등은 1부만 납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출판사가 4부, 인쇄소가 2부를 납본해야 하며, 수입자료의 경우에도 그 부수가 50부 이상(DB는 100부 이상)이면 1부를 납본해야 한다. 노르웨이에서는 인쇄자료(마이크로, 사진)의 경우, 7부를 납본해야 하지만 디스크·디스켓·테이프·카세트에 수록한 전자문헌으로서 50부 이상을 출시한 경우와 음반·필름·비디오그램은 각각 2부를, 다큐멘터리나 방송자료는 1부를 납본하면 된다. 또한 오프라인 매체로 복사하거나 50부 이상을 수입한 전자문헌, 그리고 텔레컴이나 컴퓨터 네트워크 등으로 이용가능한 전자문헌은 각각 2부를 납본해야 한다. 핀란드에서는 6부를 납본해야 하지만, 신문과 시청각자료는 2부로 제한하고 있다. 러시아는 출판물에 사용된 언어를 기준으로 부수를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러시아어로 출판물은 16부를, 기타 언어로 출판된 자료는 7부를, 신문은 9부를 납본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일본은 출판주체를 기준으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등이 출판한 경우에는 2~30부(국은 5~30부, 도·부·현·지정도시는 5부, 기타 시구는 3부, 정촌은 2부)의 법정 부수를, 기타 민간출판물은 최량판 1부를 납본하도록 개정한 바 있다.

이처럼 적게는 캐나다의 1부에서 많게는 일본의 30부에 이르기까지 부수의 기준이 다른 이유는 국가마다 문화유산의 수집 및 보존시스템이 다를 뿐만 아니라 집중제와 분산제 중 어떤 납본제도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부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 납본부수는 출판사의 최소 부담 원칙과 국가도서관의 최소 확보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집중 납본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다수 국가도서관에서는 2부(이용용, 백업 및 보존용) 이상을 확보하면 무난하다. 다만 자료의 가격이 고가이거나 소수의 부수를 출시한 전자출판물은 1부만 납본하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납본시한도 <표 8>처럼 발행 당일에서 최고 3개월까지 국가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자료가 출판된 후에 즉시 납본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특히 일간이나 주간으로 발행된 자료는 더욱 더 그러하다. 어떤 자료든 출판 당일로부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납본되지 않으면 나중에 소급해서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데 납본시한을 1주일 이하로 규정한 경우, 그 기간이 국가도서관에 도착한 기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출판

<표 8> 납본시한의 현황

| 국 가                              | 납본시한    |
|----------------------------------|---------|
| 미국, 인도네시아                        | 3개월     |
| 핀란드, 헝가리                         | 2개월     |
| 영국, 노르웨이, 한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 30일(4주) |
| 남아공                              | 14일(2주) |
| 캐나다                              | 1주일     |
| 프랑스, 일본(공공기관)                    | 발행 당일   |

물의 발송날짜를 지칭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우편시스템이 열악한 경우에는 납본시한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납본시한은 자료의 수령날짜가 아닌 우송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5 납본의 보상과 제재

먼저 납본에 따른 보상문제는 미묘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납본자료에 대한 실제 경비를 보상하는 제도는 한국(민간출판물에 한하여 소매가격의 50%), 일본(도서는 정가의 40~60%, 마이크로자료는 50~60%, 정기간행물은 40~50%), 독일(150DM 이상의 고가자료, 500부 이하의 한정판에 대한 보상요구가 있을 때에 각각 50%) 등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대개 정가의 절반 정도를 보상한다. 나머지 대다수 국가의 법령은 출판 및 우송비용을 납본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느 방식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보상제도를 두는 목적은 출판비용을 보전해 줌으로써 자발적 납본을 유인하는데 있다. 소수의 출판물을 고가로 출시하였을 경우에는 보상제도가 없으면 납본자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납본부수 만큼의 판매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가에서는 납본에 소요되는 제비용이 출판사의 손익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보상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환언하면 개인, 도서관, 다른 주체가 입수하는 출판물의 가격에는 이미 국가도서관에 납본하는 제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예단한다. 가령 몇

천부를 출판·판매할 때는 납본비용이 자료의 구입가격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런가 하면 납본자료의 대부분은 국가서지에 포함되므로 홍보효과와 더불어 매출증대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출판사가 납본한 자료는 영구히 보존되어 후손에게 전수되는 비가시적 편익도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말하면 국가도서관에 납본된 자료는 현재의 대중에게 제공되고 미래의 세대를 위한 보존과 이용가능성이 보증되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전자출판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만약 납본법령이 실비보상을 강제한다면 구입할 여력이 없는 피납본기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렇다고 해서 보상납본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일 수는 없지 않는가. 고가의 전자출판물을 소수 부수만 생산한 경우에는 자발적 납본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최소비용을 보상하는 예외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에서 1995년부터 일부의 패키지계 전자출판물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납본과 연계한 면세정책(조재순 2000, 70)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여지가 있다.

한편 납본에 따른 보상여부를 불문하고 제대로 납본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가. 대개는 자발적 납본을 유도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는 납본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최고 50만 프랑, 캐나다는 출판사에 최고 2만5천 달러와 개인에 2천 달러, 미국은 2천5백 달러로 규정하고 있다(Lariviere, 12). 일본에서는 소매가격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내에도 과거의 법령에는 제재조항을 두

있으나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삭제한 바 있다. 어떤 경우에도 법령에 제재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식문화의 유산을 수집·보존해야 하는 국가도서관의 막중한 책무를 감안하면 자발적 납본을 유도하되, 법령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재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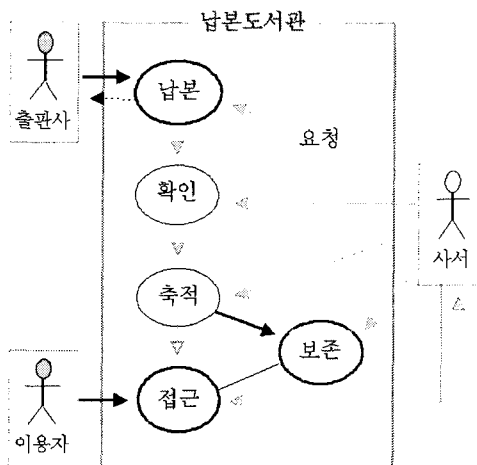
### 3. 6 자료의 매체변형

납본제도는 국가도서관의 자료수집을 위한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물론 납본에는 자료확보를 중시하는 이념이 내재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도서관이 수집한 자료에 대한 최적의 접근 및 보존환경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은 국가적 문화유산을 수집·관리·보존하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납본제도는 국가도서관의 장서관리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논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림 7>에 도시한 것처럼 출판사

는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국가도서관에 적정 부수의 출판물을 적시에 납본하고, 사서가 납본자료를 확인·축적·보존할 때 이용자의 접근과 활용이 가능하다. 만약 출판사의 납본의지가 부족하거나 사서의 보존노력이 부실하면 이용자의 접근 불만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출판사가 모든 자료를 적시에 납본하더라도 국가도서관의 축적 및 보존시스템이 부실하면 접근장애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전한 보존이 불가능하다. 특히 전자출판물은 다른 기록매체보다 수명이 짧기 때문에 영구보존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은 납본법령에 자료의 접근과 보존을 위한 형질변경의 권리를 규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납본도서관은 복본을 준비하고 재생하며 기술변화에 맞추어 자료를 변환하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Oppenheim). 실제로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등의 관계법령은 국가도서관으로 하여금 납본자료의 복본생산(포



<그림 7> 전자출판물의 납본수집-보존과정

맷변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호주와 영국도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납본법령에는 보존용 전자출판물의 복사, 다운로드, 포맷변형, 재구성과 가공, 마이그레이션을 허용하는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손을 위해 영구보존은 불가능할 것이다.

#### 4. 요약 및 결론

한 나라의 출판물은 국가적 문화유산의 핵심을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도서관은 다양한 유형의 출판물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 접근과 이용을 극대화하고 후대에 안전하게 전수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특히 국가도서관에게는 그 총괄적 및 최종적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 이를 위한 가장 유력한 제도적 장치가 납본제도이다. 그러나 인쇄자료 중심의 납본법령을 모든 전자출판물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를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국내 납본제도의 개선모형을 제안하기 위한 선행연구의 차원에서 주요 국가의 전자출판물 납본제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납본법령은 국가의 역사적 또는 문화적 배경, 법제와 행정구조, 출판사정과 정보환경, 도서관 시스템 등을 반영하여 국가도서관법, 납본법, 저작권법, 일반 도서관법, 행정명령(포고) 등의 양태로 존재한다. 그것이 전용법령이든 다른 법령의 일부 조항이든 납본제도의 근본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체계화되어야 한다.

② 납본주체는 출판매체의 다양화를 감안하여 자료유형별로 세분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반대로 피납본기관은 인쇄자료를 총괄하는 국가도서관이 전자출판물의 수집 및 관리기능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납본창구를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③ 지식문화의 수집과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전자출판물(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납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도적 및 실무적 난제가 엄존하므로 적용할 범위, 출판물의 국적 판별기준, 망라성 원칙, 장서개발정책의 마인드, 출판사의 인정기준이나 우선순위, 도서관의 기술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상(제외) 자료의 범주를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

④ 납본부수는 출판사의 최소 부담원칙과 국가도서관의 최소 확보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납본창구를 단일화하는 경우에는 최소 2부(이용용, 백업 및 보존용)를 확보하도록 규정하되, 소수로 출시된 고가의 전자출판물은 1부만 납본하도록 하는 예외조항이 필요하다. 그리고 납본시기는 자료가 출판된 후에 즉시 납본되는 것이 이상적이며, 그 시한은 국가도서관의 수령일자가 아닌 출판사의 송부일자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납본은 국가적 장서관리를 전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국가도서관이 이용자의 정보 접근 및 보존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저작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납본법령에 전자출판물의 복사와 다운로드, 포맷변형과 재가공 등에 관한 권리를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

⑥ 모든 자료에는 무료납본의 원칙을 적용

하되, 고가의 극소수 전자출판물에 한하여 자발적 납본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실비를 보상하는 예외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납본의무를 다하지 않은 출판사에 대한 제재문제는 규제 완화의 차원이 아닌 지식문화의 체계적 수집 및 보전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따라서 납본 불이행을 제재하는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에 구미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납본제도를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 핵심내용은 아날로그형 자료에 전자출판물을 추가하고 법

적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기존의 납본법령에 인터넷 정보검색의 보편화와 전자출판물의 대중화라는 사회사조가 반영되지 않으면 국가적 문화유산의 결락현상이 불가피하고 지불능력에 따른 정보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국가도서관의 존립기반이나 존재이유와 직결된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령'의 부실한 납본규정을 전향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윤희윤. 2001. 국가도서관의 전자출판물 수집 및 보존방안. 『도서관』, 56(3): 3-48.
- 윤희윤. 2002. 『대학도서관경영론』. 완전개정판. 대구: 태일사.
- 田中 嘉彦. 2000. 納本制度改革の動向: 國立國會圖書館電子出版物への對應. 『情報の科學と技術』, 50(4): 212-217.
- 조재순. 2000. 국립중앙도서관에 있어서의 전자출판물의 납본제도 개선방안. 『제38회 전국도서관대회 主題發表論文集』 2000년 9월 28-30일. [경주: 교육문화회관].
- Arnold, Steven E. 2000. "Guest Editorial." *The Electronic Library*, 18(1): 6.
- Bide, M., E.J. Potter, and A. Watkinson. 1999. *Library and Information Commission Research Report 23: Digital Preservation: An Introduction to the Standards Issues Surrounding the Deposit of Non-print Publications*. London: Book Industry Communication.
- Brophy, Peter and Peter M. Wynne. 1997.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and Performance Measurement for the Electronic Library: eLib Supporting Study (MIEL2): Final Report*. Preston: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 Conference of Directors of National Libraries. 2000. "전자출판물과 법적 납본." 이숙현 역. 『도서관』, 55(2): 99-118.
- Council of Europe, Council for Culture Cooperation, Culture Committee. 1999. *Guidelines on Library Legi-*

- slation and Policy in Europe*.  
Strasbourg: The Committee.
- Gray, Sharon. 2000. "The Myth and Reality of Electronic Journals." *Serials Review*, 26(4): 63.
- Harai, Naoko. "Electronic Publications and National Bibliography in Japan." [online]. [cited2002.4.10]. <<http://www.ndl.go.jp/e/publications/newsletter/112/123.html>>.
- Jasion, Jan T. 1991. *The International Guide to Legal Deposit*. Aldershot: Ashgate.
- Lang, Brian. "The Legal Deposit of Electronic Publications." [online]. [cited2002.4.5]. <<http://www.unesco.org/webworld/memory/legaldep.htm>>.
- Lariviere, Jules. 2000. *Guidelines for Legal Deposit Legislation: A Revised, Enlarged and Updated Edition of the 1981 Publication by Dr. Jean Lunn*. Paris: UNESCO.
- Lawrence, S. and C.L. Giles. 1999. "Accessibility and Distribution of Information on the Web." *Nature*, no.400: 107-109.
- Lenares, Deborah. 1999. "Faculty Use of Electronic Journals at Research Institutions." In *Racing Toward Tomorrow: Proceedings of the ACRL Ninth National Conference*. Chicago: ALA/ACRL.
- Martin, Elizabeth. "Management of Networked Electronic Publications: A Table of Status in Various Countries." [online]. [cited2002.4.11]. <[http://www.nlc\\_bnc.ca/obj/r7/f2/consult4-e.pdf](http://www.nlc_bnc.ca/obj/r7/f2/consult4-e.pdf)>
- Muir, Adrienne and J. Eric Davies. 2000. "Legal Deposit of Digital Material in the UK: Recent Developments and the International Context." *Alexandria*, 12(3): 151-166.
-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PADI: Preserving Access to Digital Information." [online]. [cited2002.4.10]. <<http://www.nla.gov.au/padi/topics/67.html>>
- National Library of Scotland, Department of General Collection. 1999. *Legal Deposit*. Edinburgh: NLS.
- O'Connor, Steve. 2000. "Value in Existing and New Paradigms of Electronic Scholarly Communication." *Library Hi Tech*, 18(1): 40.
- Odlyzko, Andrew. 2000. "The Rapid Evolution of Scholarly Communication." *The Economics and Usage of Digital Library Collection*, [online]. [cited2002.2.11]. <<http://www.si.umich.edu/PEAK-2000/program.html>>
- Oppenheim, Charles. "The Legal Deposit of Non-Print Publications." [online]. [cited2001.12.20].

- <[http://elj.warwick.ac.uk/jilt/legdep/97\\_3opp/](http://elj.warwick.ac.uk/jilt/legdep/97_3opp/)>
- Owen, J.S. Mackenzie and J.v.d. Walle. 1996. *Deposit Collections of Electronic Publications*.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 Rugaas, B. 1998. "Developing a New National Library in Norway." *Alexandria*, 2(1): 41-49.
- Seadle, Michael. 2001. "Copyright in the Networked World: Digital Legal Deposit." *Library Hi Tech*, 19(3): 299-303.
- Wilson, T.D. 1998. "Redesigning the University Library in the Digital Age." *Journal of Documentation*, 54(1): 15.